

「바둑경기 규정」 개정안 비교표

2025. 07. 01. 시행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면 주의를 줄 수 있다.	선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상황을 판단해 주의를 부여한다.	문구 변경
	1. 제7조 제5항 제1호 제가목에 따라 선수가 제출한 전자기기에서 소리나 진동이 발생한 경우	1. 제7조 제5항 제1호 제가목에 따라 선수가 제출한 전자기기에서 소리나 진동이 발생한 경우	
	2. 제13조 제6항(화장실 사용)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 제6항(화장실 사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계시기 사용)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계시기 사용)를 위반한 경우	
	4.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예 : 콧노래 부르기, 부채·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 바둑돌을 잘그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행위 등)	4.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예 : 콧노래 부르기, 부채·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 바둑돌을 잘그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행위 등)	
	5. 선수의 이의제기가 잘못된 경우	5. 선수의 이의제기가 잘못된 경우	
제17조 (주의)	6. 계시기에 손을 올려놓는 경우나, 착점한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계시기를 누르는 경우		제18조(경고)로 이동
	7. 선수가 고의로 대국을 지연시키는 경우(경기 중 고의 착점포기 등)	6. 선수가 고의로 대국을 지연시키는 경우(경기 중 고의 착점포기 등)	
		7. 착점 중 돌을 두 칸 이상 밀면서 두는 경우	제18조(경고)에서 이동
		8. 사석을 통의 뚜껑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단 사석이 통 뚜껑에서 넘치는 경우, 상대 선수가 볼 수 있도록 뚜껑 주변에 보관할 수 있다 (* 1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제18조(경고)에서 이동 ※ 1년간 적용 유예
		9. 착점 후 계시기를 누르고 사석을 들어내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누르지 않는 경우	제18조(경고)에서 이동
		10. 대국 종료 전, 공배를 남겨두고 일시정지를 누를 경우	신설
	8. 기타 심판이 판단할 때 경기에 방해되는 행위	11. 기타 심판이 판단할 때 경기에 방해되는 행위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18조 (경고)	①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를 선언하고 벌점 2집을 부여한다.	① 선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상황을 판단해 경고를 선언하고 벌점 1집을 부여한다.	페널티 변경(2집→1집) 및 문구 변경
	1. 착점 중 돌을 한 칸 이상 밀면서 두는 경우	1. 착점 중 돌을 집어 올린 경우(원 착점지 또는 다른 곳에 착점할 수 있다)	제17조(주의)로 이동
	2. 착점 중 돌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동시키거나 집어 올린 경우		문구 변경
	3. 착점 중 돌이 밀린 상태로 게시기를 누른 경우		삭제
	4. 착점 후 게시기를 누르고 사석을 들어낸 경우(필요시, 심판은 시간을 조정한다)		제17조(주의)로 이동
	5. 상대의 사석을 만지거나 상대 선수에게 사석을 돌려주는 경우		제17조(주의)로 이동
	6. 사석을 통의 뚜껑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추가
	7. 주의가 2회 누적된 경우		제17조(주의)에서 이동
② 심판은 반칙행위자의 돌 2개를 상대 선수 사석통에 추가하고 기록지에 기록한다.	② 심판은 경고행위자의 돌 1개를 상대 선수 사석에 추가하고 기록한다.	페널티 변경(2개→1개)	
제19조 (반칙)	①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없이 반칙패를 선언한다.	①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없이 반칙패를 선언한다.	
	1.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	1.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2.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낸 경우	2.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낸 경우	
	3.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3.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4. 착수 금지 점에 둔 경우	4. 착수 금지 점에 둔 경우	
	5.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5.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6. 경기 중 선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6. 경기 중 선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7. 제13조 제8항(부정행위)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7. 제13조 제8항(부정행위)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8. 경기 종료 전 게시기를 끈 경우	8. 경기 종료 전 게시기를 끈 경우	
	9. 경고가 2회 누적된 경우		삭제

조항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19조 (반칙)	② 반칙을 했을 경우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는 경우 대국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단,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음 착수 시점까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반칙을 했을 경우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는 경우 대국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단,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음 착수 시점까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③ 본 규정 제7조(전자기기의 휴대 및 소지 등)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규정 제7조(전자기기의 휴대 및 소지 등)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선수의 제5항 제1호, 제8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소속기사 내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선수의 제5항 제1호, 제8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소속기사 내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2. 제9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 라운드의 팀 성적 전체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해당 대회의 운영 규칙(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2. 제9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 라운드의 팀 성적 전체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해당 대회의 운영 규칙(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3.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대국장 내에서 적발이 된 경우(가방 등에 소지),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한다.	3.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대국장 내에서 적발이 된 경우(가방 등에 소지),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한다.	
	4. 외국바둑협회 소속된 선수와 팀 관계자의 징계는 해당 외국바둑협회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단, 위반이 적발된 선수와 팀 관계자는 본월 주최·주관 대회에 1년~3년간 출전 또는 참여할 수 없다.	4. 외국바둑협회 소속된 선수와 팀 관계자의 징계는 해당 외국바둑협회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단, 위반이 적발된 선수와 팀 관계자는 본월 주최·주관 대회에 1년~3년간 출전 또는 참여할 수 없다.	
	5. 제7조 위반에 대한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그 후 적발된 경우에는 소속기사 내규에 따른 징계 처분만 가능하다.	5. 제7조 위반에 대한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그 후 적발된 경우에는 소속기사 내규에 따른 징계 처분만 가능하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이의 제기는 선수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의 제기는 선수만이 할 수 있으며, 행위 발생 즉시(5분 이내)에 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감독 삭제 및 이의제기 시간 제한 추가
	1.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감독의 이의 제기가 잘못된 경우 해당 라운드의 감독 이의제기권은 소멸된다.		